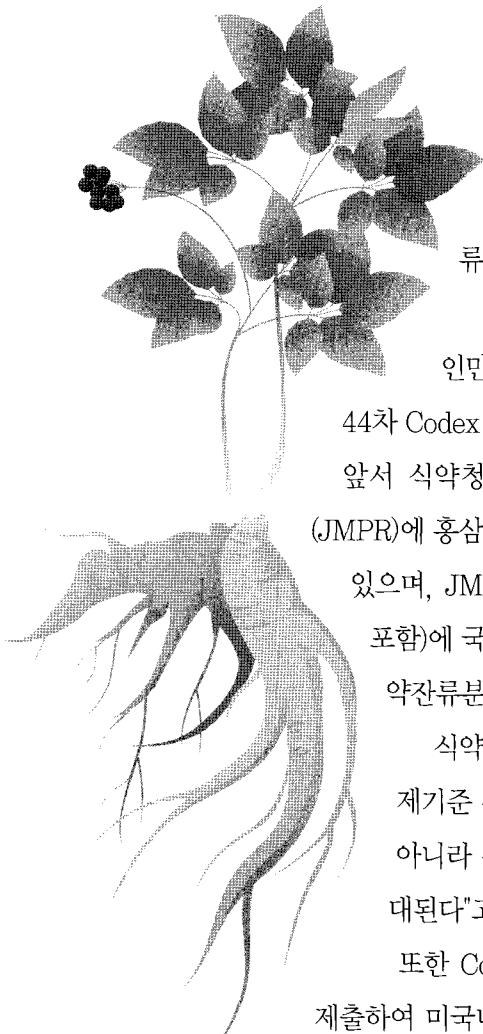


홍삼 농약잔류허용기준, 국제기준 된다

홍삼(인삼 가공품 포함) 기준(안) 0.5ppm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10월 11일 우리나라와 홍삼에 대해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사실상 국제기준으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절차적인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2012년 4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44차 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10년 5월 Codex 국제잔류농약전문가그룹(JMPR)에 홍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관한 국내 연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JMPR도 국내 연구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홍삼(인삼 가공품 포함)에 국내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 정식 제안한 상태다.

식약청은 "이번 홍삼 중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국제기준 신설로 국내 홍삼 및 홍삼 가공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홍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Codex에 제출된 자료는 올해 안에 미국 환경청(EPA)에도 제출하여 미국내 국내 홍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인정도 요청할 계획이며, 참고로 식약청은 지난 3월 국내 산·학·관의 관련 전문가 및 관련자들로 구성된 '식품 수출 활성화 국제기준설정 협의체'를 발족했다.

홍삼 관련 국제기준 연구는 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 연구사업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충북대, 강원대, 인삼공사, (주)동부한농 참여하여 수행했다. Ⓡ